

서울특별시

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(등기)

1.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(전용차로의 설치) 및 제160조 제3항(과태료)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와 관련입니다.
2. 무인카메라와 버스장착형카메라 및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.

가. 위반일시(렌트카 변경 재부과) : `18.04.19 ~ `18.05.27

- 무인감시카메라(통행위반) : `18.05.28 ~ `18.06.10

- 버스장착·기동(시민신고) : `18.04.02 ~ `18.05.15

나. 통보건수 : 주식회사오스카메디칼 등 5,217명

다.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

구분	건 수	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				적 발 제 외	
		소 계	CCTV (통행위반)	기 동(PDA) (버스장착형)	시민 신고	서손 건수	제외사유
금회	5,551	5,217	4,915	216	86	334	-연속단속 -면제차량 -진입구간 짧음 -자납 -기타
전회 누계	81,688	60,135	57,404	2,196	535	21,553	
누계	87,239	65,352	62,319	2,412	621	21,887	

라. 통보방법 :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

마.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: `18.06.14 ~ `18.07.04(20일간)

붙임: 1. 사전통보 등기발송 내역. 1부.

2. 적발제외 내역 1부. 끝.

노미선 교통지도과 2018-07-02 16:06:59



서울특별시

주무관 **노미선** 전용차로과장팀장 **김숙자** 교통지도과장 **06/15 김정선**

협조자

시행 교통지도과-13065 () 접수 ()
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(서소문동) /
전화 2133-4569 /전송 2133-4904 / 부분공개(6)